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5. 22.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查 經 過

- 가. 발의일자 : 2008년 5월 14일
- 나. 발 의 자 : 구애라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08년 5월 19일
- 라. 상정일자 :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5월 20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 설명자 : 구애라 의원)

가. 개 정 이 유

- 서울특별시가 2008년 3월 12일 가임기 여성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이외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 요 내 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림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 등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제3조)
- 체육시설의 사용예정시간보다 일찍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정전이나 우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하고, 사용자가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산정함(안 제6조)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감면사항을 별표1의 비고란에서 이전하여 항을 신설하고(안 제9조 제2항),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13조)
-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위탁 선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16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안 별표2 내지 별표3)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8년 3월 12일 가임기 여성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 안 제9조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 안 제3조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주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대림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 등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명시하여 주민이 체육시설의 현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 안 제6조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인지하여야 할 사용시간의 산정 방법과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 제10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개정하며,
- 안 제13조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6조 기 위탁 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위탁에 대한 사후조치로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하며

- 안 별표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등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果：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발의년월일 : 2008년 5월 14일

발의자 : 구애라 의원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가 2008년 3월 12일 가임기 여성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가임기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이외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대림운동장, 안양천 체육시설 등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제3조)
- 체육시설의 사용예정시간보다 일찍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정전이나 우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하고, 사용자가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산정함(안제6조)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별표 1의 비고란에서 이전하여 항을 신설하고(안제9조제2항),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제9조제3항)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함(안제10조)
-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제13조)
-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제16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안별표 2 내지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쪽~6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거법률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단서조항 중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의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제9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되 제1항의 서두에 “구청장은”을 삽입하고, 제1항제4호는 삭제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4.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③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1호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로 하고, 제2호는 삭제하며, 제3호 중 “사용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제11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는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를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의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3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별표 1의 제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로 한다.

별표 1의 영등포구민체육센터에 규모와 주요시설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9,131㎡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	-------------------------	---------------------------	--

별표 1의 대림테니스장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영등포구민체육센터란 다음에 대림운동장 체육시설란, 양평동 체련장란, 대방동 체련장란, 당산2동 배드민턴장란, 양평2동 배드민턴장란, 도림2동 배드민턴장란, 안양천 체육시설란, 도림천 체육시설란, 유수지 체육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대림3동 780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니스장 3면
양평동 체련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 구 장 2면
대방천 체련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도림2동 배드민턴장	도림2동 265	320㎡	배드민턴장 3면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2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족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축 구 장 2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17,448㎡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동)	540㎡	농 구 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2동 유수지	12,105㎡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1,450㎡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2,670㎡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별표 2의 제목 “사용료”를 “개인사용료”로 하고, 관련조항을 “제8조 관련”에서 “제8조제2항 관련”으로 하며, 테니스장 사용료와 체육관 및 수영장외의 대관료를 삭제 하되, 별표란 외의 비고조항을 포함하는 비고란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고,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다.
-----	--

별표 3의 전용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기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적용)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9,131㎡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대림3동 780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니스장 3면
양평동 체력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 구 장 2면
대방천 체력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도림2동 배드민턴장	도림2동 265	320㎡	배드민턴장 3면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2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축 구 장 2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17,448㎡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 동)	540㎡	농 구 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2동 유수지	12,105㎡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 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1,450㎡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2,670㎡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별표 2]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 사용료	대 상	기본사용료 (1회) 상한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4,000	16,000	32,000	48,000	56,000	64,000	72,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2,000	48,000	56,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골프 연습장	성 인	6,000	월 12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월 100,000					
체력 단련장	성 인	2,500	월 50,000					
	청소년 (어린이)	2,000	월 40,000					
체육관	성 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면하고,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대관료	비 고
체육관	체육경기	150,000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기 타	300,000	
수영장	체육경기	280,000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기 타	560,000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비 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 가.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 대조표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제명)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 운영·관리조례</u>	(제명)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u> 에 의거 <u>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u>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심신 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u>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u>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u>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u>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
<신설>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u>구청장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u>
제4조(사용허가) ①(생략) ②제8조제1항 <u>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u> ③(생략)	제4조(사용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u>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u> ③(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생략)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현행과 같음)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p>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1. 주간 : 06:00~18:00 2. 야간 : 18:00~22:00</p> <p><신설></p>	<p>제6조(사용시간) ①.....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주간 : 06:00~18:00 2. 야간 : 18:00~22:00</p> <p>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p>
<p>제7조(시설의 개방) (생략)</p>	<p>제7조(시설의 개방)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제3조의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p> <p>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p>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p>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1.~3. (생략)</p> <p><신설></p>	<p>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p>
<p>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p> <p>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삭제></p>
<p>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p> <p>④구청장은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4조(지도자 배치) (생략)</p>	<p>제14조(지도자 배치)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설물관리) (생략)</p>	<p>제15조(시설물관리) (현행과 같음)</p>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p>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생략)</p> <p>②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u>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u></p> <p>③구청장은 <u>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u></p> <p>④위탁에 관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3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u></p>																																																																	
제1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생략)	제1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생략)	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체육시설 (제3조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 (제3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위 치</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영등포 구민체육센터</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내)</td> <td></td> </tr> <tr> <td>대림운동장 체육시설</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80 (대림체육공원내)</td> <td></td> </tr> </tbody> </table>	시설명	위 치	기타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내)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80 (대림체육공원내)		<table border="1"> <thead> <tr> <th>시 설 명</th> <th>위 치</th> <th>규 모</th> <th>주요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영등포 구민체육센터</td> <td>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td> <td>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9,131㎡</td> <td>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td> </tr> <tr> <td>대림운동장 체육시설</td> <td>대림3동 780</td> <td>16,498㎡</td> <td>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니스장 3면</td> </tr> <tr> <td>양평동 체력장</td> <td>양평동5가 128-1</td> <td>1,628㎡</td> <td>농 구 장 2면</td> </tr> <tr> <td>대방천 체력장</td> <td>신길3동 376</td> <td>4,243㎡</td> <td>게이트볼장 1면</td> </tr> <tr> <td>당산2동 배드민턴장</td> <td>당산동6가 91-34</td> <td>564㎡</td> <td>배드민턴장 4면</td> </tr> <tr> <td>양평2동 배드민턴장</td> <td>양평동5가 128</td> <td>240㎡</td> <td>배드민턴장 3면</td> </tr> <tr> <td>도림2동 배드민턴장</td> <td>도림2동 265</td> <td>320㎡</td> <td>배드민턴장 3면</td> </tr> <tr> <td rowspan="3">안양천 체육시설</td> <td>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2동)</td> <td>30,508㎡</td> <td>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td> </tr> <tr> <td>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td> <td>5,300㎡</td> <td>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축 구 장 2면</td> </tr> <tr> <td>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td> <td>17,448㎡</td> <td>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td> </tr> <tr> <td>도림천 체육시설</td> <td>둔치체육시설(도림2동)</td> <td>540㎡</td> <td>농 구 장 1면</td> </tr> <tr> <td rowspan="3">유수지 체육시설</td> <td>도림2동 유수지</td> <td>12,105㎡</td> <td>조깅 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 보트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td> </tr> <tr> <td>대림3동 유수지</td> <td>11,450㎡</td> <td>조깅 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트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td> </tr> <tr> <td>신길 유수지</td> <td>2,670㎡</td> <td>조깅 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td> </tr> </tbody> </table>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9,131㎡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대림3동 780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니스장 3면	양평동 체력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 구 장 2면	대방천 체력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도림2동 배드민턴장	도림2동 265	320㎡	배드민턴장 3면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2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축 구 장 2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17,448㎡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2동)	540㎡	농 구 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2동 유수지	12,105㎡	조깅 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 보트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1,450㎡	조깅 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트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2,670㎡	조깅 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시설명	위 치	기타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내)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80 (대림체육공원내)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9,131㎡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대림3동 780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니스장 3면																																																															
양평동 체력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 구 장 2면																																																															
대방천 체력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도림2동 배드민턴장	도림2동 265	320㎡	배드민턴장 3면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2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축 구 장 2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17,448㎡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2동)	540㎡	농 구 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2동 유수지	12,105㎡	조깅 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 보트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1,450㎡	조깅 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트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2,670㎡	조깅 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	--------

[별표 2] 사용자료(제8조 관련)	[별표 2] 개인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

(단위: 원)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대상	기본사용료 상한(1회)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자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4,000	16,000	32,000	48,000	64,000	80,000	96,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72,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골프 연습장	성인	6,000	월 120,000					
	청소년(어린이)	5,000	월 100,000					
체력 단련장	성인	2,500	월 50,000					
	청소년(어린이)	2,000	월 40,000					
테니스장	성인	5,000	1일 1면 8시간 기준 40,000		조명시설 사용시 해당사용료의 10% 가산			
	청소년	4,000	1일 1면 8시간 기준 32,000					
체육관	개인사용료	성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수영장	대관료	체육경기	150,000					
		기타	300,000					
수영장	대관료	체육경기	80,000					
		기타	500,000					

1. 체육관의 사용자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자료임
2. 수영장의 월 사용자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금액임
3. 사용자료 환증 및 할인
①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자료의 30% 범위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범위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자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자료 합계액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④ 연간 사용자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연간사용료의 10% 범위내에서 할인 할 수 있음
⑤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할인
- 국가유공자 50% 할인
- 장애인(장애 1~3급) 4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장애 4~6급)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할인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30% 할인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료 등은 공공 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자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료를 감안하여 규정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음

비고
1.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자료 한다.
2. 중복할인불가

구분	사용료 대상	기본사용료 상한(1회)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자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4,000	16,000	32,000	48,000	64,000	80,000	96,000
	청소년	3,000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72,000
	어린이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골프 연습장	성인	6,000	월 120,000					
	청소년(어린이)	5,000	월 100,000					
체력 단련장	성인	2,500	월 50,000					
	청소년(어린이)	2,000	월 40,000					
체육관	성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1. 체육관의 사용자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자료로 한다.
2. 수영장의 월 사용자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자료의 1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자료를 합한 금액의 1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6개월 이상 사용자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자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은 사용자료의 10분의 40을 감면하고, 장애등급이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7.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자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자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자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자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료 등을 감안하여 규정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별표 3] 전용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사용료 대상	대관료	비고
체육관	체육경기	150,000	-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기타	300,000	
수영장	체육경기	280,000	-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 동절기(11월~2월) 수영장의 사용자료는 기본 사용자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기타	560,000	

비고
1.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료를 가산한다.
가.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자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나.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2.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상기 사용자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